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0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4.

발 의 자:소병훈·황운하·김 윤

한민수・박 정・장종태

김교흥 • 권칠승 • 이병진

윤종군 • 추미애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2월 3일,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,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, 무장병력 본청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.

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(안 제73조의3 신설).

##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) ① 의장은 전시·사변·내란·외환 또는 계 엄이 선포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「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  -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 나 변경한다.
  -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.
  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 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.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 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&lt;신 설&gt;</u>	제73조의3(원격영상회의 등) ① 의장은 전시·사변·내란·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등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(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이조에서 같다) 방식으로 개의할수 있다.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.

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표결할 수 있다.

-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. 다만,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수 있다.
-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 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 영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